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중보건위기상황 대비 전략적 위기 소통 체계 마련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(4·5급 1명, 5급 1명)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7조제1항 단서 중 “2명(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)”을 “4명(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,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,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2명(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,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)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7조(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별표 5와 같다. 다만, 「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, 별표 6의 정원 중 2명(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	제27조(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4명(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보건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,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,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) ----- 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정원대비표[별표 6]

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(제27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총계	476	478	+2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475	477	+2
·	·	·	
·	·	·	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	<신 설>	1	+1
·	·	·	
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	<신 설>	1	+1
·	·	·	
·	·	·	